

고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7호

2025년도 고양시 감사관 및 대민협력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고양시 감사관 및 대민협력관(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및 인원

구분	임용직급	임용직위	선발인원	임용기간
개방형직위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감사관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개방형직위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대민협력관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5년 범위 내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 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민간인의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3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4 주요 업무

감사관

- 감사종합계획 수립, 자체감사, 공공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실시
- 외부감사(감사원·중앙기관·도)에 대한 수감 및 처분 요구 사항 처리
- 공무원 비위 예방 및 조사·처리, 징계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 언론보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등 적정성 검토·분석·조정
- 주요업무 집행 전 일상감사를 통한 적법성, 타당성 점검
- 사업의 집행계획·계약·집행 타당성 점검 및 조사 등

대민협력관

- 갈등관리 및 민원 조정
- 복합민원, 직소·집단민원 등 의견 수렴
- 고질적인 지역 현안 해결

5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나.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라.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역법」 제76조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 1. 공무원이 될 자격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① 청소년성보호법
- (대상)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 (제한) 법원이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명령
- ②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대상) 아동·노인·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 (제한) 법원이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아동·노인·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명령

□ **감사관 임용자격 요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자 격 요 건

-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고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단,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8 또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련분야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정 불가)

□ **대민협력관 임용자격 요건**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응시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구분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 경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근무한 대민(대외)협력, 갈등관리 등 대민협력관 담당업무와 관련한 분야

※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정 불가)

6 보수수준 및 복무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구 분	적용대상	연 봉 액 (천원)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 4호 (4급 상당)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	68,106

○ 연봉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위 표 연봉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의 경력·능력·면접결과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30% 범위 이내 책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7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함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 실시(PPT발표 → 질의·응답)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을 검증
- 심사대상 능력요건 : ①전문가적 능력, ②전략적 리더십, ③변화관리 능력, ④조직관리 능력, ⑤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PPT(프레젠테이션) 발표 ※ 제출기한 : 접수마감일(25. 4. 11.(금)) 18시까지

- 내용 : 고양시 관련 주제 선정 후 본인의 직무수행계획과 연계하여 발표
- 발표파일은 원서접수 시 담당자 이메일(dpfls420@korea.kr)로 제출
- 발표시간은 총 10분 이내(시간엄수)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고양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붙임파일]
- 시험공고 : 2025. 3. 25.(화) ~ 2025. 4. 6.(일)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4. 11.(금) (5일간)

○ 접수장소 : 고양시청 본관 4층,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09:00~18:00 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 시청 신관 1층(민원여권과)에서 증지 구입(10,000원) 후 응시원서에 부착
- 대리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및 방문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 접수

-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앞
- 응시수수료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 10,000원)을 구입하여 동봉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택배, 퀵서비스 불가)
- ※ 단, PPT(프레젠테이션) 발표파일은 접수마감일(25.4.11.) 18시까지 이메일 제출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확인을 위해 인재채용팀(031-8075-2376)으로 확인전화 필수

□ 시험일정 (일정은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응시원서 접수기간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5. 4. 7.(월) ~ 4. 11.(금) <5일간>	'25. 4. 28.(월) 전·후	'25. 4. 30.(수) 전·후	장소 미정	'25. 5월 중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니 고양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고 → 채용공고(합격자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수 수 료 : 고양시 수입증지 첨부(10,000원 상당)
 - 구입장소 : 고양시청 신관1층 민원여권과(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부착)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 ⑥ 프레젠테이션 발표 파일(PPT) ※ 25.4.11. 18시까지 제출
 - 담당자 이메일(dpfls420@korea.kr)로 제출
-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 ⑨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 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ice.or.kr>)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 각 1부 [별지 제8호서식]
- ⑫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임용 예정 직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하여야 함.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 회사 자체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업무분장표 등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상근(주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에도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명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분야와 관련한 자격증만 제출

⑭ 학위·연구 논문 사본, 연구실적 목록, 기타 실적관련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⑮ 병적증명서 1부 (남성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자에 한함)

⑯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자에 한함)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서류 착오 기재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031-8075-23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